



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

수신: 이종배 귀하

제목: 민원에 대한 추가자료 송부

1.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끝.

붙임1.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사본 1부

2.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사본 1부.

3. 상품교차판매에 따른 「퍼스트홈론 금리우대 이벤트 체크리스트」 사본 1부.

수 인
인 지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제1조(과징금, 연체금, 부가금):	부정당	부정징
---------------------	-----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채무자) **성명** 이종배 **생년월일** 1940108 **성별** 남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제3조의 거래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하기로 한다.

제1조(거래 조건)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하기로 한다.)

대출과목 (대출종류) (퍼스트홀론)	지출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연 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사점의 고객적용금리를 의미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 자연배상금률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음.																																
대출(원도)금액 금 이역사천사백인십만 원정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이자율(1)일단위, (2)단위로 계산하며, 자연배상금율은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월단위는 12월로 나누어 계산한다.																																
거래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대출실행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에 전액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중방서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보합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출개시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한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상환기일에 전액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 기간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거래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 기간중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거래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부터 초기 ()년 동안 거치하고 잔여기간인 ()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중 금 ()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초기 ()개월 동안 거치하고 이후 ()개월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한다. * 대출기간 중 초기 대출상환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금부터 상환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																																
대출단로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까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개월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지는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이자지는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 첫번째, □ 세번째) 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합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저리금 납입일에 지급한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후 자동회기 등 전자적 절차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대출이자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이자율 ■ 3개월 CD유통수익률 + 연 () % ■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 연 () % ■ (5)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연 1.0 % ■ 수신금리 + 연 () % <input type="checkbox"/> 고정이자율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 ■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연 () % <input type="checkbox"/> 기간별이자율(변동이자율)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 () % 또는 COFIX + ()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 %를 적용하고, 대출잔여기간인 ()년간은 3개월CD유통수익률 + () % 또는 COFIX + ()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 %로 적용한다. <input type="checkbox"/> 기간별이자율(초기 고정이자율+잔여기간 변동이자율) ■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연 ()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 %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잔여기간인 ()년간은 3개월CD유통수익률 + () % 또는 COFIX + ()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 %를 변동금리로 적용한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년간은 연 () % 또는 ()년제 금융채유통수익률 + () %를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대출잔여기간인 ()년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고시하는 L-B금자리론 금리 + 가산금리 () % - 차감금리 () %로 변경 적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우대금리 항목(우 기준금리별 가산금리에 반영됨)	중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합니다)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에 다음과 같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약정한 보합상환원금의 상환 및 한도대출로 운용한 대출금의 상환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1.2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총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일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 단,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기타대출 ()	기타대출 퍼스트홀론, 잔금대출, 그룹론의 경우 매년 대출잔액의 10 %이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매년'이라 함은 대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제 해당일자(대출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우대금리 항목(우 기준금리별 가산금리에 반영됨) <table border="1"> <tr> <td><input type="checkbox"/> 우회과제</td> <td><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td> <td><input type="checkbox"/> 원리금통</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증빙</td> </tr> <tr> <td>() %</td> <td>() %</td> <td>() %</td> <td>(0.1) %</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대출금액2억원 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장애인</td> <td><input type="checkbox"/> 3차녀이상</td> <td><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공과금</td> <td><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체크) 사용</td> <td><input type="checkbox"/> 영입직접전입</td> <td><input type="checkbox"/> 통세이브</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그룹론</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우회과제	<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	<input type="checkbox"/> 원리금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증빙	() %	() %	() %	(0.1) %	<input type="checkbox"/> 대출금액2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3차녀이상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 %	() %	() %	() %	<input type="checkbox"/>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체크) 사용	<input type="checkbox"/> 영입직접전입	<input type="checkbox"/> 통세이브	() %	() %	() %	() %	<input type="checkbox"/> 그룹론	() %	() %	() %	() %	() %	() %	() %	약정 한도 미사용료 한도거래(퍼스트홀론, 잔금대출, 그룹론)의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 %의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며 이차지급일에 이차와 합산하여 대출금에 더하기로 한다. 단, 한도사용율이 () %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우회과제	<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	<input type="checkbox"/> 원리금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증빙																														
() %	() %	() %	(0.1) %																														
<input type="checkbox"/> 대출금액2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3차녀이상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 %	() %	() %	() %																														
<input type="checkbox"/>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체크) 사용	<input type="checkbox"/> 영입직접전입	<input type="checkbox"/> 통세이브																														
() %	() %	() %	() %																														
<input type="checkbox"/> 그룹론	() %	() %	() %																														
() %	() %	() %	() %																														

본인: 이종배 (서명)

* 변동이자율의 변동주기는 제2조 이자율의 변동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3개월 CD유통수익률은 매 3개월마다, COFIX는 매 ()개월마다, 금융채유통수익률은 매 (1.0)년마다 변동되며,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3개월 CD유통수익률과 가변형 금융채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고시하는 91일물 CD유통수익률(중기기준)과 기간별 금융채유통수익률(중기기준)의 대출실행일 직전 10영업일 평균을 적용하고 COFIX는 대출실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 □ 신규채권평균지수 □ 잔액기준 □ 혼합기준을 적용하며, 고정이자율의 대출이자율은 대출실행일에 확정된다.

* 변동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고정이자율은 제3조 제2항 제1호를 선택한다.

제 2 조 이자율의 변동

- 제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변동되기로 한다.
- 3개월CO유동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고시하는 3개월CO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한다.
 - 국고채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 3년제와 5년제 보간법을 이용해 결정, 5년제 국고채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1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한다.
 - 수신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고객 이 담보로 제공하는 본인명의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적용되며, 수신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수신금리의 연동대출의 적용금리도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평잔대출기준리 연동대출의 경우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 산출하여 고시되는 평잔대출기준금리가 적용되며, 매일 변동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 금융채유동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 가 고시하는 금융채유동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변동이자율인 경우 제2조 거래조건에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되고 고정이자율인 경우 이자율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 COP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중 제2조 거래조건에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변동수기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한다.
 - U-노점자리본 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이자변동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가 매일 고시하는 해당 월 U-노점자리본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조 거래조건에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지연배상금

-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에서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족속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 인자세의 부담

-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자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한다.
- 제 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자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에서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갈기로 한다.

제 5 조 담보·보험

-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담보주택·시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주택(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포함한다.)·기타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분양받는 경우에도 주택 등의 준공 즉시 소유권취득 절차를 이행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주택 등을 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즉시 제공한다.
- 본인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은행을 위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본인은 화재보험 가입을 은행에 위임하며, 최초보험료는 대출실행금액에서 차감하고 보험가입 도래 시에는 자동이체제 의한 보험료 출금을 승인할(최초 부부기간은 ()년, 이후 매 1년마다 갱신) 본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등(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하는 주택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그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은행의 승인없이 소유권이 전항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3자로부터 은행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본인이 제3항에 따른 담보를 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대출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로 인하여 은행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제 6 조 가한연장

- 약정된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 은행의 연기정책에 따라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은행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연체·대지급, 부도 관련인 및 금융질서문란거래처
 - 연체여신 보유자
 - 감정평가 대비 과다여신 보유자
- 은행은 제항의 연기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상환기일 1개월전까지 본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하며, 본인이 연기와사를 표시한 경우 전화녹취(별도 약정서 징구 생략) 또는 소정 양식 서명날인 후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금액 및 이율 등은 은행이 정한 연기 기준을 적용한다.

제 7 조 한도대출거래에 대한 약정

-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입부라도 원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가지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여 1개월(주대입금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족속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한도초과지급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이 약정에 의하여 대출실행거래에 대해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 또는 현금 자동지급카드 등의 사용이 있는 때에는, 실행거래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실행거래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은행이 그 결제를 확인한 때까지 이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한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 원금을 충당하기로 한다.
- 이자, 지연배상금,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및 대출취급시 발생하는 대출취급수수료, 인자세, 담보권의 설정비용, 담보조사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제반비용은 실행거래에서 자동인출하거나 제2조의 한도금액 범위내 대출금액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부족으로 인하여 더할 수 없는 금액은 즉시 갈기로 한다.

제 8 조 가계당량대출에 관한 목적

-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갈기로 한다.
- 본 대출의 만기 도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잔액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기에 관한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 연장한다.
-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 이 대출기간 만료일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된다.

제 9 조 은행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

- 제8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시 본인의 사정 등으로 담보제공이 지연될 경우 은행이 본인을 대신하여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 제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은 곧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곧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은행의 지급일로부터 본인의 상환일까지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 10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대출금 수령일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해 대출을 받을에 있어 동 대출금 (부대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급한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대출금 수령위임의 표시

금 액	금 원
대출금수령 계좌번호	계좌번호 : 예 금 주 :
위임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제 12 조 분양권 전매시의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본인이 주택 등의 분양권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후 분양권을 전매,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출받은 채무를 포함하여 이 약정상의 본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 13 조 채권의 양도

- 은행은 이 약정에 기하여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대출채권주체자채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인과 및 수락인 등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출채권주체자채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인은 은행의 대출채권 양도와 관련한 제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 본인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본인의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근저당권을 추가대출 등을 위하여 더 이상 활용 할 수 없음을 동의한다. 또한, 본인이 매매·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3자 알 채무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의 채권양도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본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이 대출거래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제 14 조 기타 담보권설정

-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중서(통장)를 인도하기로 한다.
- 제항의 설정의 효력은 한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예 무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정리금, 법정정리금 등을 포함한다).
- 예금 등이 가한연장·개시·갱신·분할·병합·종액·감액 또는 이자원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친다.
- 은행은 제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거래기본약관(기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제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통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원래주)자 수 익 자	금 액 (계좌잔액)	20 7.지 입금누계액	중 서 일 자	지 급 기 일

제 15 조 근저당권 부등산 매도시 유의사항 및 은행의 송낙 철회

담보부동산 매도시 은행이 신고후 은행의 송낙을 받아 채무를 송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 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다더라도 매도인의 기타채무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신용상태, 은행의 심사기준,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하여 송낙이 불가할 수 있으나 담보부동산 매매 전에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 조 대출계약 철회

- 본인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통화 대상 대출 등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제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본인이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인자세 등 제세공과금
 -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령료
- 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은행은 본인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급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 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 17 조 기타특약사항

	(서명 또는 인)
--	-----------

*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 함

1. 본인은 은행어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의 시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설명서를 제공받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제공 받았음, 설명 듣고 이해함)

년

2019. 06. 27

성명

이종배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상담자 직위:

부장

성명:

조용배

서중

추가약정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 이종배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풍동 1096 신원백 푸레키빌이군 106-2203
 담보제공자 : 이종배
 주소 :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매수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제 2조 (기 보유 주택)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보를 제공하는 주택

종류	소유자	주소
APT	이종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풍동 1096 신원백 푸레키빌이군 106동 2203호

② 보유 중인 주택 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 등

종류	소유자	주소
APT	이종배	상 공

제 3조 (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

- 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 만기시 까지 제 2조에 명시된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 ②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 만기시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4조 (증빙자료)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 용도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 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수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제 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됩니다.

1.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에 제 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2.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 입주권,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인쇄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퍼스트홈론 금리우대 이벤트 체크리스트

1. 차주현황

차주명	이종배	생년월일	140708
신청번호	572-89-00936	대출신청금액	244-500,000

2. 퍼스트홈론 금리우대 이벤트 우대항목

항 목	가입여부 확인	증빙방법
① 타행 대한 건(동일차주 / 동일물건지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조건부 취급
②③ 본건 모기지원 신청 및 모아예금통장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시 2개 충족 우대항목으로 인정하여 0.1% 적용		모기지원 신청내용 관련서류 첨부 - 여신259 추가약정서(모기지원/오토원신청 및 약정) 및 모아예금 원장 조회표
④ 정기예금 가입(3백만원 이상/만기 1년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가입한 상품 원장조회표 첨부 → 신규 가입금액 기 납입 기준
⑤ 정액/자유적립식 펀드(신규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만기 12개월 이상 & 자동이체 금액 10만원 이상)		최근 1개월 이내 가입한 상품 원장조회표 첨부 → 신규 가입금액 기 납입 기준(통장 내용부 or 입금 명세등으로 증빙)
⑥ REA 미소개 대출 건		신청화면 신청정보 탭의 판매경로 부동산중개업소(02/03) 선택 건이 아닌 화면 캡처하여 첨부
⑦ 권원보험 미가입(전액유용) 대출 건		신청화면 담보정보 탭의 근저당권설정정보 화면 내(근저당권유용여부 에 & 추가설정예정금액 0천 원 & 유용불가 저당권이 아님) 선택 건 캡처하여 첨부
⑧ 퍼스트홈론 본건 대출 신청금액 5억원 이상		퍼스트홈론 본건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앞면)
⑨ 차주 당행 드림론(순수,집단,이벤트) 개별 대출 보유 또는 직장인 중금리대출 개별 대출 보유 (대출잔액 5백만원 이상/대출 신규시점 관계 없음)		개별 대출 원장조회표 첨부
⑩ 퍼스트홈론 본건 대출 신청금액 3억원 이상 & 본건 대출 물건지 감정가격 15억원 이상 (RETSO 감정가 조정 이전 산정된 감정가격 기준)		퍼스트홈론 본건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앞면) & 감정가격 확인 자료(KB부동산시세 화면/탁감조회 화면/외부 감정 결과서 상 감정가격 캡처화면 등)
⑪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고객		UI(1018)-4-1-1-2-고객 주민번호 입력 후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원장 출력하여 첨부 - 이용자 거래상태 : 정상 거래 중 필수 확인
⑫ 우주택세대 (채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전체가 우주택자인 경우)		주택보유 수 조회대상 범위 세대원 전체가 우주택자인 결과조회표 출력하여 첨부
⑬ 이마트 / 신세계 유입 고객으로 마케팅 리드 대상자		이마트 / 신세계 유입고객 마케팅 리드 대상자로 아래 화면 캡처하여 첨부

